

---

# 2022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



# - 목 차 -

1. 일반행정 분야 .....	1
2. 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·노동 분야 .....	4
3. 산업·경제, 농어업·축산·산림 분야 .....	18
4. 환경, 도시·교통·건설 분야 .....	27
5. 재난안전,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 .....	33

# 1

## 일반행정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의견제출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·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이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한정) 제정·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고,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검토결과 통보</li> <li>-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칙을 제정·개정·폐지</li> </ul> </li> </ul>	지방자치법 제20조 ('22. 1. 13.)	기획조정실 (법무담당관)	○		
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만65세 이상인 관련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월 10만원 *단, 생활보조비와 중복지원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 ('21. 5. 20.)	자치행정국 (자치행정과)			○ (서울)
경기도 자원봉사 온라인교육 플랫폼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 자원봉사 온라인교육 플랫폼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 상 : 자원봉사 관리자, 자원봉사 단체 리더, 일반 자원봉사자 등</li> <li>- 내 용 : 자원봉사 관련 온라인 소양교육, 전문교육 등 제공</li> </ul> </li> </ul>	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('22. 1. 1.)	자치행정국 (자치행정과)			○ (서울, 대구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알림톡 확대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</li> <li>- 도 65종, 시군 150종 복지</li> <li>- 16종 증명서 발급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공 복지정보 및 증명서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지정보 : 경기도, 시군, 공공기관 전체</li> <li>- 증명서 : 약 400여종</li> </ul> </li> <li>마이데이터 관리 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목적 : 도민의 데이터 주권 실천 지원</li> <li>- 관리기능 : 마이데이터 조회, 열람, 이동 및 활용</li> </ul> </li> </ul>	민원처리법 제10조의 2 ('21. 10. 21.) 전자정부법 제43조의 2 ('21. 12. 9.)	경제실 (데이터정책과)		○	
경기도 인권모니터단 운영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 인권모니터단 구성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활동인원 29명 (14개 시·군, 9개 분야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 인권모니터단 구성 확대를 통한 도민의 인권침해 차별행위 제보 제안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마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활동인원 1,000명까지 확대(증 971명)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('22. 2. 예정)	인권담당관		○	
공무원 대상 인권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대상) 소속 공무원</li> <li>(시기) 주기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대상)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</li> <li>(시기) 매년</li> </ul>	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('22. 1. 예정)	인권담당관		○	
도민인권 배심원제 도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민인권배심회의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안건)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선정</li> <li>- (구성) 35명(도민배심원 30명 + 전문가배심원 5명)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 ('22. 1. 예정)	인권담당관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관리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리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(임의적 규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고위직 관리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함(의무화 규정)</li> </ul>	경기도 성희롱·성평등 예방 지침 제9조 (’22. 1. 예정)	인권담당관	○		

## 2 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·노동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첫만남이용권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2. 1. 1. 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권자 :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</li> <li>- 지원금액 : 출생아당 200만원(일시금)</li> <li>- 지원방식 :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시설아동 등 현금 예외적 지급</li> </ul> </li> <li>- 사 용 처 : 유흥업소·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</li> <li>- 사용기간 :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</li> <li>-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은 개정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('21.11.25.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)</li> </ul> </li> </ul>	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( '22. 4. 예정)	기획조정실 (인구정책담당관)	○		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 19세~34세 '청년'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(도내 4.08만명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 상 :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1인 1,096천원)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3인 기준, 3,983천원)</li> <li>- 내 용 : 월 최대 20만원*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, 생애 1회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실제 월세 범위 내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주거기본법 제15조,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3조 ( '22. 6. 예정)	도시주택실 (주택정책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입사생 선발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보험료 소득월액기준</li> <li>- 기초생활수급자,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자 등</li> <li>- 원거리 구간 가산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입사생 선발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 변경 (통지서 발급 필요 약6주 소요)</li> <li>- 기초생활수급자,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자 등, 차상위(한부모가정 포함)</li> <li>- 원거리 구간 거리값으로 평가점수 산정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선발규정 (’22. 1. 1.)	자치행정국 (자치행정과)		○	
긴급복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생계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474,600원</li> <li>- 4인 가구: 1,266,900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생계비 지원액 인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488,800원 이하(14,200원 증가)</li> <li>- 4인 가구: 1,304,900원 이하(38,000원 증가)</li> </ul> </li> </ul>	긴급복지지원법 (’22. 1. 1.)	복지국 (복지정책과)	○		
생활지원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474,600원(월)</li> <li>- 4인 가구: 1,266,900원(월)</li> <li>*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</li> </ul> </li> <li>*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생활지원비 지원액 인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488,800원(월), 4인 가구: 1,304,900원(월)</li> <li>*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● 재택치료자 추가지원(신설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220,000원, 4인 가구: 460,000원</li> </ul> </li> </ul>	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(’22. 1. 1.)	복지국 (복지정책과)	○		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경기도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 150여명</li> <li>- 내용 : 월 50천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-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(’21. 12. 14.)	복지국 (복지정책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참전명예수당	◦ 1인당 年24만원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당 年24만원 → 年26만원으로 2만원 인상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’22. 1. 1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			○
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	◦ 독립유공자 및 유족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독립유공자 및 유족,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외 입원비 추가 지원</li> </ul>	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’21. 7. 14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			○
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준 중위소득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1,827,831원</li> <li>- 4인 가구: 4,876,290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준 중위소득 인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1,944,812원 (116,981원 증가)</li> <li>- 4인 가구: 5,121,080원 (244,790원 증가)</li> </ul> </li> </ul>	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1호 (’22. 1. 1.)	복지국 (복지사업과)	○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계급여 선정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548,349원</li> <li>- 4인 가구: 1,462,887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583,444원 (35,095원 증가)</li> <li>- 4인 가구: 1,536,324원 (73,437원 증가)</li> </ul> </li> </ul>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료급여 선정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731,132원</li> <li>- 4인 가구: 1,950,516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777,925원 (46,793원 증가)</li> <li>- 4인 가구: 2,048,432원 (97,916원 증가)</li> </ul> </li> </ul>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급여 선정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913,916원</li> <li>- 4인 가구: 2,438,145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인 가구: 972,406원 (58,490원 증가)</li> <li>- 4인 가구: 2,560,540원 (122,395원 증가)</li> </ul> </li> </ul>					

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</li> <li>- 건강보험료 금액의 11.52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</li> <li>- 건강보험료 금액의 12.27%</li> </ul>	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(’22. 1. 1.)	복지국 (노인복지과)	○		
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</li> <li>- 사업량: 도 직영 2개소 (용인 강남대, 포천 대진대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량 확대 : 도 직영 2개소 + 시·군 5개소(추가)</li> <li>- 화성, 의정부, 안성, 양평, 양주</li> </ul>	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(’22. 3. 예정)	복지국 (노인복지과)		○	
노인복지관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 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 사업</li> <li>- 규모: 노인복지관 10개소(공모추진)</li> <li>- 내용: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 진행 기간에 휴대용 와이파이 제공</li> </ul>	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(’22. 3. 예정)	복지국 (노인복지과)		○	
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 자산형성 지원</li> <li>- 대상: 경기도 거주 만19세 심한 장애인</li> <li>- 내용: 2년간 월 10만원 이내 1:1 매칭 지원 ※ 만기 시 약 500만 원</li> <li>- 시행: ’22.4월 예정</li> </ul>	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 (’22. 4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		○	
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정기준(구비서류)</li> <li>-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 (배변·배뇨조절 2점 이하)</li> <li>※ 의료기관 방문·검사 필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존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최종증·와상상태로 배변·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</li> <li>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’</li> <li>-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‘중증 와상장애 확인서’</li> </ul>	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(’21. 11. 5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신규 설치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0.12.31.까지 설치신고 완료시설</li> <li>※ 지원대상: 지방이양 법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(단기거주시설·공동생활가정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신설&gt; 매년 7월 말 본예산 수요조사 시점 기준, 시설 설치신고가 완료되어 정원충족률 50% 이상인 법인운영 시설로 시장·군수의 검토 및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</li> <li>&lt;신설&gt; 기존 보조금 지원 시설을 신규 인수한 법인에 대해 시장·군수가 보조금 요청 시 지속 지원 (단, 이용인·종사자 유지 및 6개월 후 시군의 운영비 지속 지원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)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'22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		○	
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건복지부 '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'에 따라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신설&gt; 시설 당 보조인력 1인 추가 지원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'22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		○	
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사자 인건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 1,300천원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 2,600천원 지원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'22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		○	
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(4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</li> </ul> </li> <li>⇒ 유형별·중증·영유아거주시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 + 지방이양 법인운영시설</li> <li>⇒ 유형별·중증·영유아거주시설 + 단기·공동생활가정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'22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쉼터 성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주시설 내 별도 쉼터</li> </ul> </li> <li>◦ 종사자 소속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65쉼터 업무 종사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쉼터 성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거주(단기)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변경</li> </ul> </li> <li>• 종사자 소속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주시설 종사자 소속으로 변경하여 업무분장에 따라 시설업무 및 365쉼터 업무 둘 다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장애인복지법 제81조 (’22. 1. 1.)	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		○	
장애인 의무고용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: 3.4%</li> <li>◦ 공공기관: 3.4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: 3.6%</li> <li>• 공공기관: 3.6%</li> </ul>	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(’22. 1. 1.)	복지국 (장애인지립지원과)	○		
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확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만 12세 여성청소년</li> <li>- 내용 : HPV백신 접종 지원 (6개월간격 2회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만 12세~26세 여성</li> <li>- 내용 : 만13~17세 1차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, 만18~26세 저소득층에 HPV 4가백신 무료 접종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감염병예방법 제24조 (’22. 1. 1.)	보건건강국 (질병정책과)	○		
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진료비용, 제증명 수수료 등 관련 사항 보건복지부에 보고 의무</li> </ul> </li> </ul>	의료법 제45조의2 (’21. 3. 29.)	보건건강국 (보건의료과)	○		
의료관련감염 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및 종사자 교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내 교육 실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, 종사자 및 실습학생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</li> </ul> </li> </ul>	의료법 제47조 (’22. 1. 예정)	보건건강국 (보건의료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약품 소비자는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·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취득 금지</li> </ul> </li> </ul>	약사법 제47조의4 (’22. 7. 예정)	보건건강국 (보건의료과)	○		
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 확대	< 환자분류소 설치기관 확대> ◦ 설치기관 : 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치기관 : 권역응급의료센터, 지역응급의료센터 + <u>지역응급의료기관(추가)</u></li> </ul>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(별표5의2~별표8) (’21. 1. 1.) * 기존기관은 '21.12.31까지 갖추도록 유예되어 '22.1.1부터 적용	보건건강국 (보건의료과)	○		
	<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확대> ◦ 격리병상 : 권역응급의료센터 5병상 이상(음압 2병상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격리병상 : 권역응급의료센터 5병상 이상 + <u>지역응급의 료센터 3병상 이상(음압1 이상)</u>, 지역응급의료기관 1병 상 이상(추가)</li> </ul>					
	< 응급의료 전담인력 배치기관 추가> ◦ 전담인력 : 권역응급의료센터 2명 ◦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: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담인력 : 권역응급의료센터 2명 + <u>소아전용응급의료 센터 1명, 지역응급의료센터 1명(추가)</u></li> <li>보안인력(신설) : 권역응급의료센터 · 지역응급의료센터 1명 이상(응급실 전담), 지역응급의료기관 1명 이상 (응급실 겸임 가능)</li> </ul>					
구급차 등의 장비 및 운용자 관련 기준 신설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급차 등의 운용자(신설) : 명의이용 금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 신설</li> </ul> </li> </ul>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4 (’21. 9. 24.)	보건건강국 (보건의료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http://library.kr (온라인도서관)</li> <li>- 기존 전자책 대출에 구독서비스 병행</li> <li>- (기존) 1인 월10권, (구독서비스) 1인 월3권</li> </ul> </li> <li>* 구독서비스는 동시접속 가능, 예약대기 없음</li> </ul>	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3조 (’22. 5. 예정)	평생교육국 (도서관정책과)		○	
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 금액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월 11,500원 → 12,000원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 시행 시군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’21년 14개 → ’22년 18개</li> <li>- 성남, 양주, 의정부, 과천 참여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내 사업 시행 시·군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~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규모 : 연 144,000원(월 12,000원)</li> <li>- 지원대상 : 18개 시·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</li> </ul> </li> <li>* 성남, 안산, 김포, 광주, 군포, 하남, 이천, 양주, 의정부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가평, 과천, 연천</li> </ul>	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(’22. 1. 1.)	평생교육국 (청소년과)		○	
자립두배통장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규모 : 100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</li> <li>·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</li> <li>· 쉼터, 자립지원관 이용기간 :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① 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</li> <li>② 쉼터에 1년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중인 사람</li> </ul> </li> <li>- 지원내용 : 1 : 2 매칭 적립 (청소년 본인 저축액에 2배, 최대 20만원 추가)</li> <li>- 지원기간 : 2년 단위, 2회 연장 시 최대 6년</li> </ul>	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(’22. 1. 예정)	평생교육국 (청소년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1인가구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인가구 지원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대상 : 도내 1인가구</li> <li>사업량 : 4개 시·군</li> </ul> </li> <li>※ 광명, 안성, 의정부, 하남</li> <li>사업내용 : 중장년 수다살롱, 식생활 개선 다이닝, 건강돌봄 프로그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인가구 지원사업 ‘재무·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’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대상 : 도내 1인가구</li> <li>사업량 : 10개 시·군(광명, 안성, 의정부, 하남, 성남, 과천, 포천, 김포, 화성, 용인)</li> <li>사업내용 :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·경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1인가구 재정설계 강화 및 자기돌봄 능력향상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※ 기존 3개 사업(중장년 수다살롱, 식생활 개선다이닝, 건강돌봄 프로그램) 동일</li> </ul>	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(’22. 1. 예정)	여성가족국 (가족다문화과)		○	
‘부모마음 성장 프로젝트’ 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식(GSEEK) ‘부모-자녀 관계 진단’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 : 진단 검사 결과 상담 필요한 도내 부모</li> </ul> </li> <li>※ 지식(GSEEK) : <a href="http://www.gseek.kr">www.gseek.kr</a></li> </ul>	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제5조 (’22. 3. 예정)	여성가족국 (가족다문화과)		○	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 : 저소득 조손가정(기초생활수급자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입학생</li> <li>지원액 : 2,500천원</li> </ul> </li> </ul>	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,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(’22. 1. 1.)	여성가족국 (가족다문화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퇴소시 5백만원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</li> <li>- 모자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퇴소시 15백만원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)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</li> <li>- 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</li> <li>- 모자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</li> </ul> </li> </ul>	<p>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('22. 1. 1.)</p>	여성가족국 (가족다문화과)		○	
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구축 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·취업 지원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대상 :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만7세~만18세)</li> <li>- 사업내용 : 가정 내 문제, 학업·진로, 교우 관계 등 생활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 상담 및 진로·취업컨설팅 등</li> </ul> </li> </ul>	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, 제10조 ('22. 1. 예정)	여성가족국 (가족다문화과)	○		
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대상 : 다문화가족 자녀(예비 초등 취학생)</li> <li>- 사업내용 : 취학전 아동 읽기, 쓰기, 셈하기 등 기본학습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				
영아수당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가정양육수당 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린이집 미이용 만0~5세 영유아 10~20만원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아수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만 0~1세(어린이집 미이용) 월 30만원 지급</li> </ul> </li> <li>• 가정양육수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만2~5세(어린이집 미이용), 월10~20만원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	아동수당법 ('22. 1. 1.)	여성가족국 (보육정책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아동수당 지원	◦ 지원대상: 만7세 미만 아동 - 아동1인당 월10만원 지원	• 지원대상 : 만8세 미만 아동 - 아동1인당 월10만원 지원	아동수당법 제4조 (’22. 3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	< 신 규 >	• 추진배경 : 출·퇴근 시간대의 아침·저녁돌봄 등 운영시간 연장(1일 4시간)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 • 사업대상 : 7개 시·군, 7개소(시·군 수요조사 후 선정) • 지원내용 :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·운영비 추가지원 - 인건비 1,115천원(월)/개소당 - 운영비 150천원(월)/개소당	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- 5233(’21.9.14.) (’22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확대	◦ 31개 시군에 보호대상아동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90명 배치	• ‘22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29명 추가 배치 - 31개 시군 총 119명 배치	아동복지법 제15조~16조의2 (’22. 10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	◦ 인건비 개소당 최대 3명 지원	•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ADHD 아동 등을 보호 하고 있는 시설에 추가 인건비 지원 - 추가 인건비 : 50개소에 각 1명	아동복지법 제59조 (’22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	< 신 규 >	•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 실현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확대 구축 추진 - 지역 거점 기반 권역별 자립지원 업무 추진 - 자립지원전담요원 국비 지원 인력 확보 20명 - 집중사례관리 180명 추진 등	아동복지법 제38조 (’22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
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대상 :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아동 및 보호종료아동</li> <li>◦ 지원내용 : 자립지원정착금 1,000만원/인/일시금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립정착금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 지급 (전국 최고)</li> </ul>	아동복지법 제38조 ('22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대상 : 아동양육시설·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</li> <li>◦ 지원내용 : 보호자(후원자)와 국가 (지자체)가 1:1 매칭(월 5만원 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매칭비율 1:2</li> <li>- 지원한도 월 10만원</li> </ul> </li> </ul>	아동복지법 제38조 ('22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</li> <li>◦ 지원내용 : 30만원/인/월</li> <li>◦ 지급기간 : 3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대상 및 지급기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</li> <li>- 지급기간 : 5년</li> </ul> </li> </ul>	아동복지법 제38조 ('21. 8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가정위탁 양육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육보조금 30만원/월/인</li> <li>- 전문아동보호비 20만원/월/인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내용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육보조금 40만원/월/인</li> <li>-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/월/인</li> </ul> </li> </ul>	아동복지법 제59조 ('22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습재료비 20천원/인/월</li> <li>- 특별위로비 40천원/인/연4회</li> <li>- 교육보호비 등 총 6개 항목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체육복비 지원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5만원이내/인/일시금</li> </ul> </li> </ul>	아동복지법 제59조 ('22. 1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입양아동대상 보호비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자체 친생부모 상담 및 입양대상아동 결정('21.6.30)에 따라, 아동이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비 지원으로 입양 공적책임 강화</li> <li>• 사업대상 : 입양대상아동 123명</li> <li>• 사업기간 : '22.7월~</li> <li>• 지원내용 :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100만원/인/6개월</li> </ul>	입양특례법 제35조 제2항 ('22. 7. 1.)	여성가족국 (아동돌봄과)	○		
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</li> <li>- 지급금액 : 337천원~1,291천원(기본급의 5%~10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'21년 대비 5.7%인상</li> <li>- 지급금액 : 356천원~1,365천원(기본급의 5%~10%)</li> </ul>	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규정 제125조 ('22. 1. 1.)	노동국 (노동정책과)		○	
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</li> <li>- 사회복지시설, 산업단지, 요양병원 등 20개소</li> <li>- 지원금액 : 개소당 20~30백만원 이내(개보수 20백만원, 신설·지상화 30백만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대상 확대</li> <li>- 사회복지시설, 산업단지(제조업), 요양병원 등 70여개소</li> <li>- 지원금액 : 개소당 20백만원~40백만원 이내 (개보수 20백만원, 신설·지상화 30백만원, 산업단지 등 공동휴게시설 40백만원)</li> </ul>	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('22. 1. 1)	노동국 (노동정책과)		○	
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'21년 생활임금 : 10,540원 (월 220만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2년 생활임금 '21년 대비 5.7%인상 : 11,141원(월 232만원)</li> </ul>	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('22. 1. 1.)	노동국 (노동정책과)			○ (서울 등 14개 시도)
아파트 경비·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 지원</li> <li>- 지원규모 : 184개소, 아파트 최대 500만원 도비 지원 (자부담10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파트 경비·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</li> <li>-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지원대상 확대</li> <li>※ 아파트 경비노동자 ⇨ 아파트 경비·청소노동자</li> <li>- 지원규모 확대 : 184개소 ⇨ 392개소</li> </ul>	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 ('22. 1. 1.)	노동국 (노동권익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외국인주민 긴급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갑작스러운 질병, 재해,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 외국인에게 긴급지원</li> <li>※참여 시·군 : 수원, 용인, 성남, 부천, 평택, 시흥, 포천, 여주</li> <li>- 생계비 : 질병, 사고로 인한 생계어려움 / 최대 1,000천원(4인가구 기준)</li> <li>- 의료비 : 실버지원 / 최대 1,000천원(1인가구, 의료기관 직접 지원)</li> <li>- 해산비 : 가구 구성원 출산 / 최대 500천원(1인가구)</li> </ul>	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제6조 (’22. 1. 예정)	노동국 (외국인정책과)		○	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시험·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및 평가표(별표 4, 별표 5)</li> <li>- 품질관리 기준의 대분류를 조직의 운영, 시설 및 장비, 시험검사, 품질보증 4개 분야로 구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험·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및 평가표 개선(별표 4, 별표 5)</li> <li>- 국제기준(ISO/IEC 17025:2017)과 조화되도록 개선</li> <li>- 품질관리 기준의 대분류를 종전 조직의 운영, 시설 및 장비, 시험검사, 품질보증에서 일반요구사항을 추가하여 기존 4개 분야를 총 5개로 구분함</li> </ul>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56호 (’22. 7. 1.)	보건환경연구원 (식품의약품연구부)		○	

### 3 산업·경제, 농어업·축산·산림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개 시·군 시행</li> <li>농민 개인에게 매월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(연 60만원)</li> <li>* 이천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연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7개 시·군 시행(확대)</li> <li>농민 개인에게 매월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(연 60만원)</li> <li>* 이천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연천, 용인, 가평, 광주, 김포, 의왕, 의정부, 평택, 하남, 양주, 동두천, 파주</li> </ul>	경기도농민기본 소득 지원 조례 (’21. 5. 20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	○	
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 내 1개 면(面) 예정(최대 4,167명)</li> <li>해당지역 주민 1인 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지급</li> </ul>	경기도농촌기본 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 (’21. 11. 2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	○	
주말·체험영농 농지취득 등 제도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말·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 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업진흥지역 내 주말·체험영농 농지소유 제한</li> <li>기존 주말·체험영농 목적 소유농지 계속 소유가능</li> </ul>	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 (’21. 8. 17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업법인 농지 취득 제도 강화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</li> <li>부동산 등 목적외 사업 영위 등 농업법인 해당</li> </ul>	농지법 제8조의3 (’21. 8. 17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농업법인 농지 처분제도 강화	◦ 농지 처분의무 부과 이후 처분 의무 미이행시 농지처분명령	• 농지 처분의무 부과 없는 농지처분명령 조항 추가 - 거짓·부정한 방법 농지취득 -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	농지법 제11조 (’21. 8. 17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처분 관련 이행강제금 상향	◦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등 -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- 토지가액의 20%	•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향 -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,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 -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%	농지법 제63조 (’21. 8. 17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불법 취득 광고행위 벌칙 신설	< 신 규 >	• 농지를 불법취득 토록 중개·광고하는 행위 -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	농지법 제7조의2 및 제60조 (’21. 8. 17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의 부정취득 등 벌칙강화	◦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	•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	농지법 제57조 (’21. 8. 17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의 불법 임대차 등 벌칙강화	◦ 농지 불법 위탁경영 및 불법 임대차 행위 - 1천만원 이하 벌금	• 농지 불법 위탁경영 및 불법 임대차 행위 - 2천만원 이하 벌금	농지법 제61조 (’21. 8. 17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강화	◦ 의무기재사항 - 취득면적, 소유농지이용실태 - 노동력·농기계 등 확보방안 - 농지소유 현황 등 기재	•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시 의무기재사항 추가 등 - 직업, 영농능력, 영농거리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- 공유지분 비율(각자 취득하려는 농지표시 의무화) - 주말·체험영농계획서 작성(증명서류 제출 의무화)	농지법 제8조 (’22. 5. 18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농지취득자격 증명 처리기간 증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민원처리기간</li> <li>- 농업경영 목적 4일</li> <li>- 주말체험영농 2일</li> <li>- 농지전용목적 2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민원 처리기간 증가</li> <li>- 농업경영 목적 및 주말체험영농 7일</li> <li>- 농지전용목적 4일</li> <li>-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</li> </ul>	농지법 제8조 (’22. 5. 18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제한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래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</li> <li>- 의무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</li> <li>-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</li> </ul>	농지법 제8조의3 (’22. 5. 18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위반 과태료규정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농지취득 관련 등 농지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</li> <li>-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 신청(5백만원)</li> </ul>	농지법 제64조 (’22. 5. 18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상속·이농인 농지처분 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상속인 및 이농인 관련 농지 처분의무 부과조항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속인 및 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할 경우</li> <li>- 농지처분의무 부과근거 명확화</li> </ul>	농지법 제10조 (’22. 5. 18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위원회 설치·구성·기능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 체계 보완</li> <li>- 시·구·읍·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</li> </ul>	농지법 제44조 ~ 제46조 (’22. 8. 18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위원회 심의로 농지취득 제도강화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·구·읍·면에 농지위원회 심의</li> <li>- 투기우려지역 등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</li> </ul>	농지법 제8조 제46조 (’22. 8. 18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도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아래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시·구·읍·면장에게 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지임대차계약·사용대차계약의 체결·변경·해제</li> <li>-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</li> </ul> </li> </ul>	농지법 제49조의2 (’22. 8. 18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농지이용정보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규정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지대장 정보변경 신고 관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지대장 변경 거짓 신청(5백만원)</li> <li>-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(3백만원)</li> </ul> </li> </ul>	농지법 제64조 (’22. 8. 18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○		
종자산업기반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대상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자업, 육묘업 종사자</li> </ul> </li> <li>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~30억</li> <li>- 고구마 종순, 씨감자, 특수마·맥류·잡곡, 과수 묘목, 화훼·종묘, 채소 종자, 딸기(원원묘, 원묘·보급묘), 마늘종구, 생강종구, 육묘(실생·접목), 약용작물 종자, 버섯 종균, 녹비·사료작물 종자, 종묘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대상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자업 종사자(육묘업 삭제)</li> </ul> </li> <li>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~80억</li> <li>- (추가) 차나무, 뽕나무</li> </ul> </li> </ul>	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-2593호 (’21. 8. 10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○		
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시설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추가) 스마트팜 신축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 제9조 (’22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선택형맞춤농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소당 30억원 이내</li> </ul> </li> <li>◦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산물 생산·유통·가공·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</li> <li>※ 공동농기계 20% 이내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소당 20억원 이내(총사업비 기준)</li> </ul> </li> <li>• 지원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산물 생산·유통·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(가공분야 제외)</li> <li>※ 공동농기계 40% 이내(총사업비 기준)</li> </ul> </li> </ul>	친환경농업과 -17101호 (’21. 8 .27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	○	
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2종 시설은 필요시 실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종 시설 10년마다 1회 실시 의무화</li> </ul>	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3항 (’22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○		
토양개량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대상(부산석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석회포화도 60% 미만 간척지구</li> </ul> </li> <li>◦ 품질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사기관 : 농촌진흥청,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, 지자체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대상(부산석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관리 간척지 중 석회포화도 60% 미만 간척지구</li> </ul> </li> <li>• 품질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검사기관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지자체</li> </ul> </li> </ul>	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제4조 (’22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○		
유기질비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재원형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고, 지방비, 농협지원금 등</li> </ul> </li> <li>◦ 이행점검(품질검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진청(농관원), 지자체 합동점 검 연2회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원형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비(보전금 + 시·군비) *지방이양 전환사업</li> </ul> </li> <li>• 이행점검(품질검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·도(주관), 시·군·구(실행) 정기검사 연 2회</li> </ul> </li> </ul>	비료관리법 제7조, 농지법제21조 (’22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○		

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유기농업자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친환경농가</li> </ul> </li> <li>지원조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설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친환경 &gt; 일반농가(우선선정 순위)</li> </ul> </li> <li>지원조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신청 시 토양검정결과 제출 의무화</li> </ul> </li> </ul>	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, 제13조 (’22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○		
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(교육·컨설팅)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들녘경영체(총 2회까지)</li> </ul> </li> <li>지원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작물·밭작물·이모작 재배, 가공·유통, 체험·관광 연계 사업에 대해 교육·컨설팅, 시설·장비 등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농업·농촌및식품 산업기본법 제8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지원에관한 법률 제11조 (’22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○		
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출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토지대장 등의 서류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※ 지급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급대상농지등*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급대상농업인등**</li> </ul> </li> <li>* 지급대상농지 : 17~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</li> <li>** 지급대상농업인 : 16~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출서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정보 공동이용(MyData) 운영으로 서류제출 없이 신청가능</li> </ul> </li> <li>*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시행에 따라 농업인별로 농림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후 관련 서류 제출없이 신청 가능</li> </ul>		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(’22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정부양곡 정곡 안전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양곡 정곡(도정한 쌀) 보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 상온창고에서 보관 후 공급(저온보관은 14% 수준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부양곡 정곡(도정한 쌀) 저온 보관(100%) 후 공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저온 보관으로 품위변질 방지 등 정부양곡 수요자에게 양질의 쌀 제공</li> </ul> </li> <li>※ 수요자 : 기초생활수급자, 군·관수 등 매년 114천톤</li> </ul>	농식품부 내부지침 (’22. 4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○		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 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두리양식장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</li> </ul> </li> <li>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	내수면가두리양 식업보상법 (’21. 5. 27.)	농정해양국 (해양수산과)	○		
해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단계적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스티로폼 부표 제도적으로 사용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 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면 양식장 등 어장</li> </ul> </li> <li>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2년 11월 13일부터 수하식 양식장에서,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해면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불가</li> <li>위반 시 과태료 처분(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)</li> </ul> </li> </ul>	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(’22. 11. 13.)	농정해양국 (해양수산과)	○		
신고어업 이중등록 방지를 위한 신고어업종합관리 시스템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어업 이중등록 확인 가능한 시스템 미 구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 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어업인(나잠어업, 맨손어업)</li> </ul> </li> <li>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자체 담당자가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, 신고자의 타지역 신고어업 등록폐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이중등록을 차단하고 전국 신고어업인 정확한 통계 분석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	수산업법 제47조 (’21. 9. 1.)	농정해양국 (해양수산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시행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가 지원하는 기업지원 공모사업 참여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지원 제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위반적용 법률) 공정·노동·환경·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</li> <li>(위반사실 조회기간) 공모일 기준 2년 이내</li> <li>(제한기준) 사업참여 자격 제한</li> <li>(제출서류) 행정처분기관의 법위반사실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약속서(법위반 없음)</li> <li>(이의신청 및 구제)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에 대한 심의후 구제여부 결정</li> </ul> </li> <li>※ '22년 지원사업 제한기준 고시('21.12월)</li> </ul>	경기도 법위반기업지원 제한 조례 ( '21. 9. 16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		○	
기업 ESG 경영 도입기반 조성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목적) 글로벌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인식확산 추진</li> <li>(ESG 수준 실태조사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대상) 100개사(창업, 유망, 중견기업)</li> <li>(내용) 기업진단 및 ESG 수준 등 실태조사 K-ESG 연계한 적용가능한 평가지표 도출</li> </ul> </li> <li>(ESG 도입 컨설팅) ESG 도입 컨설팅 지원(20개사)</li> <li>(ESG 인식확산) 설명회, 간담회 연계한 교육</li> </ul>	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경기도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11조제3항 ( '22. 1. 1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형태 : 시군보조</li> <li>- 도비 30%, 시군비 30%, 자부담 40%</li> <li>◦ 사업대상 :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)</li> <li>◦ 지원한도 : 기숙사 신축(30백만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형태 : 시군보조</li> <li>- 도비 35%, 시군비 35%, 자부담 30%</li> <li>• 사업대상 : 도내 중소기업(제조업)</li> <li>• 지원한도 : 기숙사 신축(50백만원)</li> </ul>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(’21. 8. 10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		○	
경기도 그린뉴딜 선도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목적) 국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고, 도내 유망기업 발굴 및 기술경쟁력 강화</li> <li>• (사업내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대상) 7개사(친환경소재 및 저탄소 분야 관련 기업)</li> <li>- (내용) 시제품 개발, 성능평가, 인증, 판로개척 등 패키지 지원</li> </ul> </li> <li>• (지원한도) 기업 당 5천만원 이내</li> </ul>	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(’22. 1. 1.)	경제실 (특화기업지원과)		○	

## 4 환경, 도시·교통·건설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 중개보수 요율 변경	<p>◦ 주택의 중개보수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 별</th> <th>거래금액</th> <th>상한요율</th> <th>한도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매매· 교환</td> <td>5천만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6</td> <td>25만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80만원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이상 6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6억원 이상 9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9억원 이상</td> <td>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임대차 등</td> <td>5천만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20만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>30만원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이상 3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3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3억원 이상 6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6억원 이상</td> <td>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 별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매매· 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	2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6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5	-	9억원 이상	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	-	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	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천분의 3	-	3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6억원 이상	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	-	<p>•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인하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거래내용</th> <th>거래금액</th> <th>상한요율</th> <th>한도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1. 매매·교환</td> <td>5천만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6</td> <td>25만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80만원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이상 9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6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2. 임대차 등</td> <td>5천만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20만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>30만원</td> </tr> <tr> <td>1억원 이상 6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3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4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</td> <td>1천분의 5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15억원 이상</td> <td>1천분의 6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1. 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	2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4	-	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	2. 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	1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3	-	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-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	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(’21. 10. 19.)	도시주택실 (토지정보과)	○		
종 별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매· 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억원 이상	1천분의 9이내 에서 협의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천분의 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억원 이상	1천분의 8이내 에서 협의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거래내용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 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이상 9억원 미만	1천분의 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 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억원 이상 6억원 미만	1천분의 3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	< 신 규 >	<p>• 「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」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지역)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</li> <li>- (대상)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</li> <li>- (자격) 단독주택 소유자</li> <li>- (공사) 외벽개량, 단열, 방수 등 집수리와 주차장, 화단·쉼터 조성, 담장 등 경관개선 공사</li> <li>- (보조) 공사비 90% 지원, 지원상한액 1,200만원</li> </ul> <p>※ 매칭비율 : 도 30%, 시·군 70%</p>	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 (’22. 1. 1.)	도시주택실 (도시재생과)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적확정측량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 23개 사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(7개 사업 추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 대지조성사업</li> <li>기업도시개발사업</li> <li>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</li> <li>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(연기·공주지역)</li> <li>민간임대주택사업</li> <li>중소기업 단지조성사업</li> <li>도로건설사업</li> </ul> </li> </ul>	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 개발사업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('21. 11. 29.)	도시주택실 (토지정보과)	○		
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일부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태계보전협력금* 부과징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(부과상한액) 50억원</li> <li>-(용도) 생태계 보전·복원사업 등 14개 유형의 사업 지원</li> </ul> </li> <li>*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훼손면적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부과, 이를 환경 복원 등 사업에 사용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부과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</li> <li>-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(3만㎡ 이상에 한함)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일부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(명칭변경) 생태계보전협력금 → 생태계보전부담금</li> <li>-(부과상한액 폐지)</li> <li>-(용도조정) 생태계복원사업 위주로 용도조정(14→10개사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설(2) : 자연환경복원사업, 도시생태 복원사업</li> <li>· 폐지(6) :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, 오수처리시설 지원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, 제49조 ('22. 1. 6.)	환경국 (환경정책과)	○		
환경교육진흥법 전명 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률 제명, 내용 등 전부 개정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변경) 법률 제명 변경</li> <li>· 환경교육진흥법 →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li> <li>- (신설)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</li> <li>· 중앙, 지방, 공기관 소속 공무원 환경교육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	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'22. 1. 6.)	환경국 (환경정책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신설)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 도입</li> <li>· 시·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</li> <li>- (변경)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</li> <li>· 광역·기초센터 도지사 지정 → 광역·기초에 따라 지정 권자 분리(광역 : 도지사, 기초 : 시장·군수)</li> </ul>					
중앙 및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당초 26.3% → 40% 감축 변경(13.7% ↑)</li> </ul> </li> <li>•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('24년 예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립 시행 : 5년마다(계획기간 10년)</li> </ul> </li> <li>• 온실가스감축인지(탄소인지) 예산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재정법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 예정</li> </ul> </li> <li>•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 제정('22. 상반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환경부 표준조례안 제공('21. 12월 말 예정)</li> </ul> </li> <li>•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</li> <li>•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·운영 등</li> </ul>	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 녹색성장 기본법 ('22. 3. 25.)	환경국 (기후에너지정책과)	○		
전기사업 허가 관련 시·군 사무위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·군에 위임한 전기사업 허가 관련 사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00kW 이하 발전설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·군에 위임한 전기사업 허가 관련 권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당초) 500kW 이하 발전설비 ⇒ (변경) 1,000kW 이하 발전설비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( '21. 11. 2.)	환경국 (기후에너지정책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차단위 100면 이상</li> <li>-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</li> <li>-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0.5%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차단위 50면 이상</li> <li>-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</li> <li>- 충전시설 의무설치비율 신축 5%, 기축 2%</li> </ul> </li> <li>※기축 건물 유예기간(1년~4년)</li> </ul>	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(’22. 1. 28.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	○		
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축시설 5%, 기축 정부·지자체 등 소유 시설 5%</li> <li>- 그 외 시설 2%</li> </ul> </li> <li>※기축 건물 유예기간(1년~4년)</li> </ul>					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방해행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</li> </ul> </li> </ul>	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(’22. 1. 28.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	○		
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금액 : 보일러 1대당 일반20만원, 저소득층60만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보조금 지원금액 하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 20만원 → 10만원(저소득층 변동없음)</li> </ul> </li> </ul>	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(’22 .1. 1.)	환경국 (미세먼지대책과)	○		

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근거 마련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살생물제* 노출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</li> <li>- 대상 : ① 원인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②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등</li> <li>- 지원내역 : 진료비, 장애일시보상금, 사망일시보상금, 장례비</li> </ul> <p>* 살균제살조제, 살서제·살충제, 제품보존제, 섬유가죽류 보존제 등</p>	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2 (’21. 12. 31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	○		
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슬레이트 사업 지원금액</li> <li>- 주택 344만원/동</li> <li>- 비주택 344만원/동 (주민참여예산 포함시)</li> <li>- 지붕개량(일반) 300만원/동</li> <li>- 지붕개량(취약) 1000만원/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슬레이트 사업 지원금액 상향</li> <li>- 주택 352만원/동</li> <li>- 비주택 540만원/동</li> <li>- 지붕개량 439만원/동</li> </ul>	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(’22. 1. 1.)	환경국 (환경안전관리과)	○		
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</li> <li>- 커피전문점 등*에서 음료 판매 시 1회용 컵에 보증금**을 부과,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</li> <li>*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·동일 법인</li> <li>**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</li> </ul>	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’22. 6. 10.)	환경국 (자원순환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방류수수질기준</li> <li>-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</li> <li>※ COD기준(40~130mg/L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방류수수질기준 변경(COD → TOC)</li> <li>-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항목 폐지</li> <li>- 총유기탄소량(TOC) 적용</li> <li>※ TOC기준(25~75mg/L)</li> </ul>	<p>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배출허용기준 (제34조 관련)</p> <p>부칙&lt;환경부령 제829호, 2019.10.17.&gt; 제4조(배출허용기 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유예기간 만료) (’22. 1. 1.)</p>	보건환경연구원 (물환경연구부)	○		

## 5 재난안전,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민간시행 주택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기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만 소방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적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간에서 시행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축 공사에 소방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</li> </ul>	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('22. 1. 6.)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	○		
소방공무원 신규채용(공채) 필기시험 과목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방사 공채 필기시험 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필수 3) 국어, 한국사, 영어</li> <li>(선택 2) 소방학개론, 행정법총론, 소방관계법규, 사회, 과학, 수학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필수 5) 소방학개론, 행정법 총론, 소방관계법규, 한국사, 영어</li> </ul> </li> </ul>	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4조(시험과목) ('22. 1. 1.)	소방재난본부 (인사담당관)	○		
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'문화누리카드' 발급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지원금) 1인당 연 10만원</li> <li>(사용처) 문화예술·여행·체육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카드 이용자 및 가맹점주 편의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(모바일, 홈페이지) 카드 발급 신청 시, 카드 수령방식 개선(일반우편 → 등기 우편)</li> <li>- 가맹점 온라인 등록 신청 제도 운영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('22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종무과)	○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경기도 문화의 날, 지역화폐 드림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 문화의 날, 문화시설 이용객 대상으로 이용료 일부*를 지역화폐로 환급</li> <li>* 이용료(환급액) : 1만원 이상(5천원), 3만원 이상(1만원), 5만원 이상(1만5천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화폐 환급 대상 시설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박물관미술관, 공공공연장, 공공야영장 → 박물관미술관, 공공공연장, 공공야영장 + 관광시설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('22. 3. 예정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종무과)		○	
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사업대상)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는 누구나</li> <li>- (지원내용) 구입 금액의 10%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</li> </ul> </li> </ul>	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('22. 4. 예정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정책과)		○	
'경기문화창조허브' 권역별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서·남·북부권역 중심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권역별 격차 및 동부권역 수혜 사각지대 발생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·서·남·북 4개 권역별 클러스터 통합·거점화를 통한 창업지원, 일자리창출 거점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부권역 신규 1개소 시·군 공모 추진('22.1월~)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'22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정책과)		○	
경기도 온라인 공연서비스 경기 아트온 <sup>ON</sup> 구축·운영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기도 온라인 공연서비스 경기 아트온<sup>ON</sup>* 구축·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예술인 공연영상물 소유권 보호 및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플랫폼</li> <li>- 경기도 공공배달앱 주문 시 '도내 예술인 공연영상 콘텐츠 무료제공' 프로모션 진행</li> <li>-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교육자료로 활용</li> <li>- 경기도교육청 교육자료로 활용</li> </ul> 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'22. 1. 예정)	문화체육관광국 (예술정책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
장애(예술)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교육지원) 장애인에게 음악·문학·미술·영상·미디어분야 전문예술강사 교육지원으로 장애인예술가로 발굴·육성 지원 (장애인복지관, 장애인평생교육시설, 컨소시엄 공모사업)</li> <li>• (활동지원) 장애인합창단 모집 및 ‘불만합창’곡 제작, 불만합창대회 및 다큐멘터리 제작</li> </ul>	「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」 제5조, 「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('22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예술정책과)		○	
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만5세~18세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</li> <li>- 지원금액: 매월 8만원</li> <li>- 지원기간: 연간 8개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내용 확대</li> <li>- 지원금액 : 매월 8만원 → 매월 8만5천원</li> <li>- 지원기간 : 연간 8개월 → 연간 10개월</li> </ul>	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('22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		○	
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만12~64세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</li> <li>- 지원금액: 매월 8만원</li> <li>- 지원기간: 연간 8개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확대</li> <li>- 지원자격 : 저소득 장애인 → 등록(일반) 장애인</li> <li>- 지원금액 : 매월 8만원 → 매월 8만5천원</li> <li>- 지원기간 : 연간 8개월 → 연간 10개월</li> <li>※ 지원연령 일부 축소: 만12~64세 → 만19~64세</li> </ul>	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('22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		○	
경기도 고문서 번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원문(한자 및 일본어) 공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본 탑재</li> <li>-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제강점기 경기도보를 도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번역하여 공개</li> </ul>	경기도 자체계획 ('22. 12. 예정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유산과)		○	
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장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수료기한 :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</li> </ul>	관광진흥법 시행규칙 ('22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관광과)		○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시행											
					전국 공통	경기도 시행	경기포함 일부시행									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(지자체장 포함)이 사업장, 공중 이용시설,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대재해는 ‘중대산업재해’와 ‘중대시민재해’로 구분</li> </ul> </li> <li>• 안전·보건 확보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</li> <li>-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</li> <li>-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</li> </ul> </li> <li>• 처벌규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재해 요건</th> <th>사업주·경영책임자등</th> <th>법인·기관 양벌규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</td> <td>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</td> <td>50억원 이하 벌금</td> </tr> <tr> <td>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</td> <td>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</td> <td>10억원 이하 벌금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/ul>	재해 요건	사업주·경영책임자등	법인·기관 양벌규정	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	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	50억원 이하 벌금	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	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	10억원 이하 벌금	중대재해처벌법 ('22. 1. 27.)	안전관리실 (안전기획과)  노동국 (노동권익과)	○		
재해 요건	사업주·경영책임자등	법인·기관 양벌규정														
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	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	50억원 이하 벌금														
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	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	10억원 이하 벌금														